

저자 (Authors)	최의광 Eui Kwang Choi
출처 (Source)	한국동북아논총 , (79), 2016.6, 171-196 (26 pag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79), 2016.6, 171-196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동북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33220
APA Style	최의광 (2016). 신라(新羅) 국인(國人)의 의미. 한국동북아논총, (79), 171-19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04 13: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新羅) 국인(國人)의 의미

최 의 광*

◀ 논문 요약 ▶

한국 고대 신라 정치 사회에 등장하는 국인(國人)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그 개념을 확연히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 용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개념(概念)과 실체(實體)의 구별 없이 진행되어 온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국인의 실체가 아니라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우선 어원(語原) 검토를 통해서 국(國)의 의미를 추정하고 국인이 이 국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국은 국성(國城), 국도(國都)를 가리키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국인(國人)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國) 이라고 하는 공간개념만 의지해서는 사료(史料)에 나타나는 국인의 모습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다. 사료에는 국인들이 국도(國都) 이외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인은 '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력임을 강조하였고, 또 오지암(坊知巖) 희의를 근거로 '국사(國事)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더 부여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또 전반적인 용례 검토를 통하여, 때로는 국인들이 일반민(一般民)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종래의 견해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지적하였다.

이 국인의 개념을 사료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국인은 국도(國都)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국사(國事)에 참여하며, 민(民)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상위 부류로서 위로는 왕족을 포함하며 아래로는 지방 소국의 간층(干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범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도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너무 강조하면 사료와 맞지 않으므로 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다소 유연한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국인(國人), 개념(概念), 실체(實體), 국(國), 국도(國都), 일반민(一般民)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겸임교수

I. 머리말

신라 정치·사회사에 관심을 갖다보면 반드시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국인(國人)’의 개념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三國史記』 『三國遺事』에는 ‘국인(國人)’ 용례가 다양하게 보인다. 이들은 때로는 후사를 선택하는 등 왕위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사회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견해가 구구하다.¹⁾

고대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백제 모두 이 국인이 중요한 시점마다 등장하여 이의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제인 듯 하면서도 그 개념을 설정하기가 용이치 않은 난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에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임시방편으로 간단하게 논급하고 넘어가곤 했다. 즉, 아직 학계에 이렇다 할 정의(定意)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²⁾

‘국인(國人)’은 자의(字意) 그대로 해석하자면 ‘나라 사람’으로 번역이 가능하다.³⁾ 그런데 자의(字意) 대로 사용해서는 실상과 맞지 않는 때가 많다. 때로는 특정 집단을 지칭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일정선 이상 상위 부류 전부를 가리키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민(民),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國民)의 개념으로 사용된 듯도 하여 그 범주를 정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배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피지배층까지 아우르는 큰 범주의 집단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사료 어디에도 이를 직접 설명해주는 곳은 없다. 이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해 왔지만 추정에 그쳤을 뿐 결론을 내

- 1) 신라 국인과 관련된 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이 부분을 서술 편의상 뒷부분으로 돌린다.(본고 p.190, <표-5> 참조)
- 2)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몇 편의 논고를 발표한 바 있으며 기왕의 논고가 본고의 근간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일부는 재수록 되었음을 밝힌다. 최의광, “高句麗의 國人 研究” 『史叢』 58, 2004 ;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보이는 新羅의 ‘國人’ 記事 檢討” 『新羅文化』 25, 2005 ; “新羅 元聖王의 王位繼承과 國人” 『韓國史學報』, 제37호, 高麗史學會, 2009 ; “新羅下代 王位繼承 分爭과 國人” 『史叢』 75, 高麗大學校歷史研究所, 2012.
- 3)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國人’에 대한 번역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 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많은 번역서들이 출판되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국인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체적으로 ‘나라 사람’으로 번역된 사례들이 많은데 이에 1958년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 편찬한 『삼국유사』, 1994년 이동환의 『삼국유사』, 1997년 이재호 번역 『삼국유사』, 1998년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이 편찬한 『譯註三國史記』, 1999년 리상호 번역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2006년 이가원 허경진 옮김 『삼국유사』 등에서 공히 보이고 있다. 최근 2014년에 출판된 최광식·박대재 의 역주, 『삼국유사』에서도 원문 그대로 ‘國人’ 혹은 ‘나라사람’ 등으로 번역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인 諸橋轍次에 의해 1968년에 편찬된 『大漢和辭典』, 1975년에 三品彰英이 저술한 『三國遺事考證』 등에서는 ‘國の人’으로 번역하고 있어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91년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주관하여 편찬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國人’ 항목이 아예 없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당시까지 학계에 이렇다 할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국인의 개념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고찰 순서로는, 우선 II장에서는 그동안 국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 III장에서는 이 국인의 어원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신라 국인 용례들을 검토하면서 그 개념에 다가서고자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구려 백제 발해 등 인접국 사례들도 활용하여 논거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 국인의 기본개념은 삼국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삼국 초기에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본다.

II. 「국인」 연구 문제와 과제

그동안 많은 신라사 연구자들이 국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였다. 국인은 ‘일반민’ 혹은 ‘왕경인’, ‘왕경에 거주하는 정치집단’을 가리킨다는 등 시기를 초월한 보편적 개념을 제시한 사례부터 특정 사건에 등장하는 국인에 대한 견해까지 다양하다.⁴⁾

이 국인은 신라사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이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별 진전 없이 침체되었던 것은 연구자들의 접근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온 것 중 하나는 개념(概念)과 실체(實體)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개념과 실체는 다른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의미 추구에 치중하다 보니 개념 정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즉, “오늘 ‘정치인(政治人)’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重大事)에 관련된 회의를 했다”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활동한 이 정치인의 실체는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국무위원’도 될 수 있고 또 ‘정당인들’도 될 수 있다. 여기서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범주에 포함되는 보다 구체적인 실체이다. 즉,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다 포괄하는 보다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 속에 국회의원이거나 국무위원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다. 이 ‘政治人’을 사전에 찾아보니 ‘政治家’와 같은 용어로 보면서 그 의미는 ‘정치를 시행하는 사람, 정치에 정통한 사람’으로 풀이⁵⁾하고 있다. 이의 개념을 더 구체화하여 ‘중앙 4급 공무원부터 장관급까지를 가리킨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다. 이 용어가 특정 시점에서 누군가에 의해 정의된 용어라면 모를까, 막연한 사회적 용

4) 본고 p.190, <표-5>에 국인 관련 연구 성과 참조.

5) 民衆書林 편, 『에센스 國語辭典』, 1989, pp.2194-2195.

어라하면 구체적인 정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위로 따지자면 어느 계층부터 출발해서 어느 계층까지 라고 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 사람들마다 이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기본개념이 있고⁶⁾ 이 안에 포용되는 실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개념과 그 때 그때의 실체는 다른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를 구분한 연구가 수행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 점이 간과된 것은 연구자들이 신라사 나아가 한국 고대사 전반에 나타나는 국민 전체를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지 않고 단편적인 실체⁷⁾ 확인에만 치중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실체 쪽 보다는 그 개념에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이와 결부하여 지적하고 싶은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포괄적 국민의 개념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겠냐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역사적인 용어에 대하여 그 변화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어느 측면에서는 당연히 변화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변화 부분은 개념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양(量)의 증가 즉 국민의 수효 증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 국민을 '국도(國都)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초기에 그 국도는 그 규모가 아주 적은 국성(國城)에 해당되었을 것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차츰 이 국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수량은 보다 더 커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개념이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국민이 '지배층'을 가리킨 것이라면 이는 신라 끝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고 본다. 그 지배층의 양은 늘어났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개념의 변화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이 왕위 추대 역할을 담당한 사례를 들자면, 'A'시기에는 'ㄱ' 집단(혹은 계층)이 담당했는데 'B'시기에는 'ㄴ' 집단(혹은 계층)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이종항은 박혁거세(기원전57~4)를 국왕으로 추대한 6부족장을 바로 국민이라 하였다. 그는 신라 초에 '6부족장'만이 국민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국민의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이른 바 실체들이다. 6부족장이 국민의 일부로서 활동하며 초기에 국왕을 추대했지만 나중에 파사이사금(80~112) 때에는 '군신(신료)'들이 국왕 추대의 당사자로 등장하였다. 또 벌휴이사금(184~196) 즉위 때에는 그를 추대한 주체를 그냥 '국민'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때의 국민은 실체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의 구별 없이 '국

6) 광의적 개념을 갖고 있는 이 국민을 '포괄적 국민'으로 호칭하고자 한다.

7) 물론 이를 '실체'라고 정의 하는 것이 꼭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들 나름대로도 또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편의상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고자 그렇게 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박혁거세를 추대한 이 '6부족장', 파사를 추대한 '군신(신료)'은 국인의 범주 안에 있는 실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벌휴를 추대한 이 '국인'은 그 안의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지 않고 그냥 넓은 범주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포괄적 국인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신라 국인의 개념이나 성격에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Ⅲ. 「국인」의 어원

신라에만 국한하지 말고 삼국 전체를 통관해 볼 때 이 '국인'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어원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國人'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미 '國'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국인의 의미는 우선 '國'의 의미를 찾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국」에 대하여

고대 사회에 등장하는 이 '국(國)'의 자의적(字意的) 의미를 살펴보는 데에는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설문해자』(說問解字)이다. 이는 한자(漢字) 각자(各字)의 시원적(始原的) 의미를 밝히려 한 것이니 이를 통해서 '國'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다. 이에 따르면, '國'은 '或'과 '口'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람들이 '창(槍)'이나 '과(戈)'등으로 무장하고 거주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한다.⁸⁾ '口'는 주변을 둘러싼 모습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로 이해되고 있다. 고대 중국 역시 사회 집단은 씨족, 부족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동범위는 점차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집단과의 상호 충돌을 불러왔을 것이고 급기야는 전쟁으로도 발전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 집단의 자위(自衛)를 위한 조처를 취하게 할 것인 바, 자연스럽게 주변에 성벽을 쌓아 외족의 침략을 막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자위(自衛)를 위하여 주변을 둘러싼 모습을 '국(國)'이라 하였던 것이다.⁹⁾ 결국 '국(國)'이란 거점에 거주하면서 외족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성을 쌓아놓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국(國)'에 있는 사람들을 '국인(國人)'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한편 『사원(辭源)』에서의 풀이를 보면, '국(國)'은 첫째 국가(國家)로 해석되고, 둘째는 국도(國都), 성읍(城邑)으로 해석되며 셋째는 봉토(封土), 식읍(食邑)으로 해석되고 있다.¹⁰⁾

8) 桂馥撰 『說文解字疑證』, 上海出版印刷公司承印, 1987, 531쪽(이춘식, 『사대주의』,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p.12 재인용)

9) 이춘식, 위의 책, p.12.

10) 商務印書館(北京), 『辭源』, 1992. (김재선, “『新唐書』渤海傳에 보이는 '舊國'研究”, 『新羅文化』 제22집,

이 ‘국(國)에 대한 개념은 제교철차(諸橋輓次)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도 비교적 자세히 보이는데, 즉, 국(國)의 의미는 왕(王)이 다스리는 곳, 천자(天子)와 제후(諸侯)가 다스리는 곳, 도읍지(都邑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¹¹⁾

고대 중국에서의 ‘국’이란 오늘날과 같이 꼭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며 도읍지나 통치의 중심(나라의 조정, 왕실)¹²⁾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고대 한국에서 ‘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한국 고대사회에서의 ‘국’의 의미도 ‘나라’라는 일반적인 의미 외에 ‘국도(國都)’나 그 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도 공히 나타나고 있어 한국 고대사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의 고대사회와 비교해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① 桓州 高麗中都城<중략>高麗王於此創立宮闕 國人謂之新國<『遼史』地理志 東京道 遼州>
 ② 國中大會 名曰東明<중략>其國東 有大穴 名隧穴.<『三國志』魏書 高句麗傳>
 ③ 淨神太子弟副君 在新羅 爭位誅滅<중략>國人尋光到五臺 辱陪兩太子還國寶叱徒太子 涕泣不歸陪 孝明太子歸國即位 在位二十餘年<『三國遺事』塔像篇 臺山 五萬眞身>
 ④ 保臯分兵五千人與年持年手泣曰 非子不能平禍難 年入國誅叛者立王
 <『三國史記』권제44 열전 제4 張保臯, 鄭年>
 ⑤ 天寶末 欽茂徙上京 直舊國三百里忽汗河之東<『新唐書』渤海傳>

위의 다섯 사례에서 보이는 ‘국’이란 바로 서울(왕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A-①은 고구려의 사례인데, 고구려가 수도를 옮기고 나서 국민들이 ‘신도(新都)’를 ‘신국(新國)’으로 부르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 일단 ‘국(國)’은 ‘도(都)’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료 A-② 또한 고구려의 사례인데 여기서 ‘국동유대혈(國東有大穴)’은 번역하자면 ‘국’의 동쪽에 ‘대혈(大穴)’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겠는데 여기서 ‘국’이란 역시 ‘국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국중대회’는 국도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인 것이다.¹³⁾ 사료 A-③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때는 통일 후 신문왕 때일 것으로 사려 되는데, 그 이유는 사료의 淨神(王)을 바로 신문왕으로 보기 때문이다.¹⁴⁾ 사료의 핵심 부분만 살펴보면 국민들이 오대산에 이르러 태자를 모시고 還國하려 하자 태자가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還國은 바로 還京을 가리키는 것

2003, pp.249-250, 재인용).

11) 諸橋輓次, 『大漢和辭典』縮寫版 卷3, 1968, p.73. 참조.

12) 張忠植, 『漢韓大辭典』, 2000, p.452, ‘國’ 항목 참조.

13) 余昊奎, “高句麗初期의 諸加會議와 國相”, 『韓國古代史研究』 13, 1998, p.48.

14) 『三國遺事』 제3권 제4 塔像篇 臺山五萬眞身. 여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신문왕의 이름은 政名이요, 자는 日照니 정신은 아마 정명 신문의 와전일 것이다.”

으로 보아야겠다. 당시의 오대산은 당연히 신라의 영토였다. 신라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國’이 바로 나라(신라)를 가리키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라 안에서라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태자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궁중으로 들어가서 즉위해야 되는 입장이므로 여기서의 ‘國’은 또한 ‘國都’ 즉, 王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사료는 다소 설화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國’의 용례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한 사료임에 틀림없다. A-④의 내용은 신라 신무왕 즉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청해진의 장보고가 자신의 친구 정년(鄭年)에게 군사 오천을 주고 ‘入國’하여 화란(禍難)을 평정하라는 것인데 이 때 ‘입국(入國)’이란 바로 ‘입도(入都)’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료 A-⑤는 바로 渤海의 사례이다. 보는 바와 같이 발해의 처음 수도를 ‘舊國’이라고 부른다. 본래는 舊都라고 해야 하나 흔히 舊國이라고 불러왔다. 이는 바로 새 수도가 된 ‘新國’ 上京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다.

위 사료를 통해 고구려 신라 발해 등 한국 고대 각국에서 ‘國’의 용례가 동일하게 ‘國都’를 가리킴을 알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삼국시대 초부터 통일 후까지 이 의미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살펴보면, A-①은 고구려 초기 국내성 천도 사실을 배경으로 나온 것으로 서기 1세기 정도의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②는 『삼국지』에 수록된 것으로 서기 3세기경의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③은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사료의 정신(淨神)(왕)은 신 문왕을 가리킨다고 하니 서기 7세기 말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A-④는 신라 하대 신무왕 즉위 때로 9세기 전반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A-⑤는 발해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당서』 기록에서 옮긴 것이니, 8세기 이후의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國’의 의미가 한국고대 사회 전(全)시기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즉, 중국 고대의 ‘國’의 의미와 한국고대사회에서의 ‘國’의 의미가 서로 통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2. 「국인」에 대하여

이제 ‘國人’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국 고대 사서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이 ‘국인(國人)’에 대한 설명은 이미 ‘국(國)’을 설명하면서 일정 부분 규명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국인을 國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 먼저, 이 ‘國人’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먼저 중국의 사례부터 확인해보고자 한다. 고대 중국에서의 국인 발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되곤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周나라 初에 대규모 땅을 나누어 공신을 제후로 삼았고, 봉토를 받은 諸侯는 그 族人을 거느리고 봉지에 이르게 되는 데, 봉지에 이르면 자기의 통치거점을 세우고 族들을 모아 방어 시설을 한 城邑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 때 城邑은 바로 ‘國’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데,¹⁵⁾ 이 ‘國’의 지구에 거주하는 이들을 國人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처음에 국인은 당연히 지배층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제후와 함께 봉지에 이르러서 제후국을 건설해간 세력을 지배씨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시의 국인은 이 지배씨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지배씨족은 國君(諸侯)를 중심으로 강력히 결속하였을 것이며, 새로이 卿, 大夫 등의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祭祀, 軍事 政治 등의 國事を 담당하였다고 한다.¹⁶⁾

그렇다면 고대 한국에서의 국인도 중국 고대의 국인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고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한국에서도 ‘國’의 의미와 ‘國人’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는 공간적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部나 郡, 縣 그리고 지방을 의미하는 鄉 등에 人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경우 部人, 縣人, 郡人, 鄉人 등이 될 것이다. 이때의 의미는 部, 縣, 郡, 鄉 등 각 공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¹⁷⁾

B-① 祀中 北隈郡樂也 此皆鄉人 喜樂之所由作也¹⁸⁾

② 不知所爲 東部人 紐由 進曰 勢甚危迫¹⁹⁾

③ 貴山 沙梁部人也²⁰⁾

④ 崔致遠 王京 沙梁部人也²¹⁾

⑤ 十七年秋九月 華麗 不耐二縣人 連謀率 騎兵 犯北境²²⁾

⑥ 二十二年<중략>秋九月王幸捺巴郡 郡人波路 有女子²³⁾

여기서 ‘鄉人’이니 ‘部人’이니 혹은 ‘縣人’이니 하는 용례들은 그 字意의 구조가 일단 국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縣人’이 縣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고 마찬가지로 ‘國人’은 ‘國’과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5) 이춘식, 앞의 책, p.68-69.

16) 李春植, 『事大主義』,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p.69 : 尹乃鉉, 『商周史』, 민음사, 1984, 129~131쪽. 특히 貝塚茂樹는 나라 이름에 ‘人’이 부착된 형태의 용어도 모두 ‘국인’과 같은 의미라 하였다. ‘晉·人’ ‘趙·人’ ‘秦·人’ 등의 형태도 결국의 ‘晉의 國人’ ‘趙의 國人’ ‘秦의 國人’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貝塚茂樹, 『孔子』, 岩波新書, 1970, 27쪽: 李春植, 위의 책, p.69 재인용). 최근 중국에서도 중국 고대 국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몇 사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주장도 대체적으로 국인은 ‘國都人’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徐復觀, 『兩漢思想史』, 1985, p.34 : 晁福林, “春秋時期禮的發展與社會觀念的變遷”,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1994 : 章產, “周代 國野制度 研究 評價” 『史學月刊』, 1994.

17) 박순교, “眞智王의 改革과 花郎徒의 動向” 『清溪史學』 18, 2003, 8, p.43 주 14 참조.

18) 『三國史記』 권제 32 雜志 제1 樂 鄉三竹條.

19) 『三國史記』 권제 45 列傳 제5 密友 紐由條.

20) 『三國史記』 권제 46 列傳 제6 崔致遠條.

21) 『三國史記』 권제 45 列傳 제5 貴山條.

22) 『三國史記』 권제 1 新羅本紀 제1 儒理尼師今 17年條.

23) 『三國史記』 권제 3 新羅本紀 제3 炤知麻立干 22年條.

중국 고대 국인의 발생이 국의 형성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위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國’은 周代에 제후가 봉지에 이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국 고대에서 국과 국인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중국 周代의 事例와 견주어 설명할 만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古代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정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이주민 집단들에 의해서 건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이주민 집단이 그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구려도 이주민 집단인 주몽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²⁴⁾ 백제의 경우도 온조계의 이주민 집단들에 의해서 건국되기 시작한다.²⁵⁾ 신라 역시 사정은 좀 다르지만 이주민 집단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형성되어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⁶⁾ 또 세 나라 모두 이주민들이 이주하기 전에 토착세력들이 이미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周代의 국인 발생과정과 일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처음에 국의 건설에 중심이 되는 지배세력들이 국인이라 불리었을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주변세력들과 구별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한 국가의 건국과정을 아주 단순화시킨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국의 발생과 국인의 발생과정을 짐작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정은 중국 주대의 제후의 책봉에 따른 國의 발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⁷⁾ 여기에는 물론 문제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즉, 시기적으로 중국의 周代와 삼국의 형성시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文字(漢文)를 쓰는 문화권 내에서는 정치·사회발달과정에도 유사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국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이 국호가 나라 전체를 가리켰다기 보다는 國都를 가리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高句麗’는 국호인데, 이는 본래 ‘上邑’ ‘首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의 서울이라는 말과 같이 보통명사화 한 것이라 한다. 즉, ‘高’는 上, 高, 頂, 神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句麗’란 ‘國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다.²⁸⁾ 이는 국호 ‘高句麗’가 본래 나라 전체를 가리켰다기 보다는 국도를 의식한 칭호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國이란 바로 ‘國都’를 가리키고 있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신라의 국호 ‘신라’도 ‘서라벌’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국

24) 『三國史記』 권제 13 高句麗本紀 제1 始祖東明聖王 卽位條.

25) 『三國史記』 권제 23 百濟本紀 제1 始祖溫祚王 卽位條.

26) 『三國史記』 권제 1 新羅本紀 제1 始祖 赫居世居西干 卽位條.

27) 설령 꼭 이주민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초기 건국과정에는 우세부족이든 유력씨족이든 우위를 점한 세력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이 국을 건설하는데 주역이 되었을 것이며 국인이라 불리었을 것이다. 물론 이 견해도 문제가 있긴 하다. 그것은 신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중심이 되는 斯盧國 외에 다른 소국이 많이 있었고 이들도 나름대로 국을 형성하였던 바, 이미 사로국에 복속 전에 국인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정도는 간과하고자 한다.

28) 이병도, 『譯註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96, p.330, 註 16.

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사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 신라, 발해 등 고대 여러 나라에서 공히 國이 國都의 개념으로 활용되었고 시기적으로 삼국 초부터 통일 후까지 사례가 보인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인은 모두 국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를 국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국도 안이라는 공간 개념만 갖고 국인의 개념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눌지왕 代(417~457)지방 ‘소국의 간츰’들도 바로 국인으로 명명되었고, 진성여왕 代 대야주의 왕거인도 국인으로 인정된다.²⁹⁾ 그렇다면 국도 안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만을 고집한다면 이 국인의 개념을 온전하게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공간적 개념으로만 한정하자면 국도 외에 존재할 수 있는 국인으로 여겨지는 지배층들을 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人을 國이라는 공간적 개념에 한정해서 그 개념을 설정해서는 해결이 안될 것이다. 그래서 국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 개념을 보완하면 보다 더 합리적인 개념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국인들이 하는 일 즉, 역할을 사료에서 찾아보면 바로 ‘국사(國事)’로 표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이들이 하는 일을 적절하게 표현한 용어가 국사라고 생각한다. 즉 국인들은 나라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로서의 개념도 갖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국에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의 국도(國都), 성을 같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만 한편 기능적 측면에서의 ‘통치의 중심’ 개념 또한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신라 정치사 처처에 등장하는 國事라는 용어이다. 특히 진덕왕 때 오지암(坊知巖) 회의에서 國事に 관한 일을 의논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볼 수 있다.³⁰⁾ 이는 국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인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國’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에 역할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더하면, 이제 국 이외에서 활동하는 국인들의 모습까지 포용하면서 보다 더 온전한 국인 개념에 접근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국인을, ‘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지방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정의 하면 어느 정도 합당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날 ‘政治人’을 예로 들더라도 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명시한 적이 없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 그때의 실체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제 정치인들이 ○○○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정치인의 실체는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할

29) 이 부분 즉, 눌지왕 대와 진성여왕 대 국인 기사는 4장 2절 <표-2> 국인 추정인물 관련 사료 참조.

30) 『三國遺事』 권1 제2 기이편 眞德王. “王之代有關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 -慈藏之父- 廉長公 庾信公 會于南山 坊知巖 議國事”.

수 있는 임무이기 때문이다. 실체는 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국인도 이와 견주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국인」 용례의 검토

여기서는 신라사 전반에 나타난 국인 용례들을 분야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흔히 신라사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국인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2원화 하여 적용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즉, 국인은 지배자 층을 가리킬 때와 일반민을 가리킬 때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간적으로 국도 안에서든 밖에서든 관계없이 이렇게 지배층과 일반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1. 일반민 추정 용례

우선 국인이 一般 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 국인, 일반민 추정 사례

시기	해당왕	내용	비고
상대	유례이사금	C-① 伊西古國來攻金城<중략>忽有異兵來<중략>與我軍同擊賊 破之後不知其所歸<중략>由是國人謂 先王以陰兵助戰也 ³¹⁾	
	진흥왕	② 論功 斯多含爲最 王賞以良田及所虜二百口 斯多含三讓 王強之 乃受其生口 放爲良人 田分與戰士 國人美之 ³²⁾	
	진덕왕	③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³³⁾	
중대	문무왕	④ 仁問在獄時 國人爲創寺 名仁容寺 ³⁴⁾	
하대	원성왕	⑤ 妾以明日入市爲害劇 則國人無如我何 大王必募重爵而捉我矣 <중략> 女曰 郎君無有此言 今妾之壽夭 蓋天明也 ³⁵⁾	
	경문왕	⑥ 十年秋七月大水 無雪 國人多疫 ³⁶⁾	
	헌강왕	⑦ 誓今已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國人 門帖處容之形 以避邪進慶 ³⁷⁾	
	헌강왕	⑧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故至今國人 傳此舞 ³⁸⁾	
	헌강왕	⑨ 地神山神 知國將亡 故 作舞以警之 國人不悟 ³⁹⁾	
	경순왕	⑩ 戊寅薨 諡曰敬順 (一云孝哀) 國人 自始祖至此 分爲三代 ⁴⁰⁾	

31) 『三國史記』 권제2 新羅本紀 제2 儒禮尼師今 14年條.

32) 『三國史記』 권제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23年 9月條.

33) 『三國史記』 권제5 新羅本紀 제5 眞德王 8年條.

34) 『三國遺事』 권제2 제2 紀異篇 下 文虎(武)王 法敏.

35) 『三國遺事』 권제5 제7 感通篇 金現感虎.

36) 『三國史記』 권제11 新羅本紀 제11 景文王 10年條.

37) 『三國遺事』 권제2 제2 紀異篇 下 處容郎 望海寺.

38) 『三國遺事』 권제2 제2 紀異篇 下 處容郎 望海寺.

39) 『三國遺事』 권제2 제2 紀異篇 下 處容郎 望海寺.

40) 『三國史記』 권제12 新羅本紀 제12 敬順王 9年條.

이들이 지배층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일반민으로의 국민일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다.⁴¹⁾ 대체적으로 비정치 활동으로 느껴지는 사례들이며 무어라 논할 수 없는 막연한 것들이다. 이의 기준은 물론 수량화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분히 느낌과 정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민(民)으로 볼 확실한 근거는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범지배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포괄적 국민은 소수 지배층 혹은 소수 지배 엘리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료에 나오는 바대로 그 다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하대로 오면 이들의 수효는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개념자체의 확대는 아닐 것이고 그 개념 내에서 수의 증가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 지배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포용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료에는 '國人'들이 '民'을 相對的으로 인식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國人을 民과 같은 부류로 볼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되겠는데, 단순한 사례이지 만, 다음 사료가 이에 해당된다.

D-① 初 脫解薨 臣僚欲立 儒理王太子逸聖 或謂逸聖雖嫡嗣而威明不及婆娑 遂立之 婆娑節儉省用 而愛民 國人嘉之<『三國史記』 권제1 신라본기 第1 婆娑尼師今 卽位條>

즉, 위 기사(D-①)에서의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과사이사금이 절검성용(節儉省用)하고 ‘민(民)’을 사랑하므로 ‘國人’들이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民’과 ‘國人’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사료 상으로는 ‘民’과 ‘國人’이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國人이 一般民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논리는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⁴²⁾ 이러한 모습은 고구려, 백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E-① 五年秋七月 扶餘王從弟謂國人曰 我先王身亡國滅 民無所依 王弟逃竄 都於曷思 吾亦不肖 無以興復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5年>

② 烽上王<중략>元年春三月 殺安國君達賈 王以賈在諸父之行 有大功業 爲百姓所瞻望故 疑之謀殺 國人曰微安國君 民不能免梁貊 肅慎之難 <『三國史記』 卷第17 高句麗本紀 第5 烽上王 元年>

③ 六年 太宗將復行師 朝議以爲 高句麗依山爲城 不可猝拔 前大賀親征 國人不得耕種 所克之城 實收 其穀繼以旱災 民太半乏食 <『三國史記』 卷第20 高句麗本紀 第10 寶藏王 下 6年>

④ 是歲 百濟末多王 無道 暴虐百姓 國人遂除 而立鳴王 是爲武寧王〔百濟新撰云 末多王無道 暴

41) 이에는 李鐘恒(「和白-그 起源과 構成과 權限을 중심으로-」, 國民大論文集, 1971, p.78 주15), 全基雄(『羅末麗 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도서출판 해안, 1996, p.45.), 김창겸(『新羅下代 王位繼承研究』, 景仁文化社, 2003, p.208.) 등에 제시된 사례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 부분은 최의광 논문(2005, 앞의 논문, pp.298-299.) 참조.
42) 신라 '국민'과 '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최의광 논문(앞의 논문, 2005, pp.299-300 : 앞의 논문, 2009, p.83.)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본고에서 재론한 것이다.

唐 百姓 國人共除 武寧王立 諱斯麻王-하략) <『日本書紀』 武烈天皇 4年>

신라는 물론 고구려 백제에서의 유사한 용례들까지 살펴본 것이다. 특히 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제시한 것인데 이로서 적어도 國人이 民과는 다른 부류이고 民을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존재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국인은 전후 문맥으로 볼 때 民보다는 당연히 상위계층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왕위 추대 등 중앙정치에 가담하고 있는 국인을 군신, 혹은 6부 족장 등 나름대로 지배자 층에 넣어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정치와 무관한 듯이 보이고 있는 국인은 일반민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중앙정치에 가담하는 세력과 그 외 뚜렷한 역할이 없어 보이는 막연한 경우의 국인을 지배층과 일반민으로 2원화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데 우선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단일 대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인을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다수의 개념이 부여된 범지배층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가 구성원 중 상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를 가리킬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 국인이 일반민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구휼대상을 말할 때에 항상 ‘百姓’이나 ‘民’ 등이 거론된 사례는 있어도 ‘國人’이 대상이 되었던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해당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F-① 남해 차차웅 15년에 <중략> 民間에 기근이 생기자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삼국사기』 권제 1 신라본기 제1 남해왕 15년>
- ② 2년 3월에<중략> 百姓들에게 곡식을 베풀며...<『삼국사기』 권제 1 신라본기 제1 파사이사금 2년조>
- ③ 29년 5월에 民間에 기근이 있었는데...왕이 사람을 10도에 보내어 창고를 열어 구제해주었다.<『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파사이사금 29년조>
- ④ 11년 民間에 금, 은, 주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1년조>
- ⑤ 춘하에 가뭄이 있어 남지가 가장 심하여 民들이 굶주림으로 곡식을 이송하여 구제해 주었다.<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 1 일성이사금 12년조>
- ⑥ 31년 봄에 비가 오지 아니하더니 7월에야 왔다. 百姓들이 주리매(民飢) 창고를 열어 곡식을 베풀어주었다.<『삼국사기』 권제2 신라 본기 제2 내해이사금 31년조>
- ⑦ 7년 춘하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南堂(政廳)에 群臣을 모으고<중략> 五人의 使者를 각지에 보내어 百姓의 苦患을 묻게 하였다.<『삼국사기』 권제2 신라 본기 제2 미추이사금 7년조>
- ⑧ 12년 봄에 王이 신하들에게 일러 가로되 왜인이 자주 우리의 성읍을 침범하여 百姓들이 편안치 못한지라...<하략>...<『삼국사기』 권제2 신라 본기 제2 유레이사금 7년조>
- ⑨ 5년 4월에 큰 물이 나고 7월에 또 큰 물이 났다. 10월에 왕이 一善에 행행하여 水災를 만난 百姓을 위문하고 곡식을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었다.<『삼국사기』 권제3 신라 본기 제3 소지

마립간 5년조)

- ⑩ 사자를 보내 수해를 당한 주와 군의 人民을 위문하고 1년간 租調를 면제해 주었다
 <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헌덕왕 6년 5월조 >
- ⑪ 사자를 보내어 서남의 百姓들을 위문하였다<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문성왕 2년조 >
- ⑫ 11년 하 6월 왕이 좌우에게 일러 말하기를 근년 이래 百姓이 곤궁하고 도적이 봉기하니...
 <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11년조 >

주로 상고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나 신라사 전체에서 구휼의 대상으로 국인을 명시한 적은 없어 보인다. 한번쯤은 국인이 구휼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례는 없다. 이러한 사실도 국인의 의미에 접근하는데 하나의 준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포괄적 국인은 민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민에 대한 상위 부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국인 추정 인물 확인

『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 등 사료에 등장하는 인물들로서 국인의 범주나 그 개념 이해에 도움을 주는 인물들이 일부 있어 이에 소개해 본다. 史書 찬자는 물론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겠으나 이들의 활동 속에서 국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음 아래의 인물들이 바로 그들인데 우선 이들이 등장하는 사료를 시기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은 신라 대에 구체적인 인물의 국인 해당여부 그리고 그 활동 내용을 알게 하는 사료를 제시해 본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인의 개념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박제상은 上古에 속하고 김인문은 통일기 즉 중대 초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김양·이흥·배훤백은 하대 중엽에 활동한 인물들이고 왕거인은 하대 말 진성여왕代(887~897)에 생존했던 인물이다.

박제상은 눌지마립간(417~458)이 당시 고구려 및 일본에 인질로 가 있는 동생들을 보고 싶어 소국의 ‘干’들을 불러놓고 대책을 묻는 상황에서 드러난 인물이다. 이때 삼랑주간(間敵良州干)이었던 박제상이 천거되었고 국왕인 눌지가 ‘干’들을 대상으로 국인에게 은혜를 갚겠다 하였으니(則能報恩於國人) 이 내용을 통하여 ‘干’들이 바로 국인일 수 있음을 알게 한다.⁴³⁾

43) 눌지마립간과 박제상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양 사서에 전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박제상을 ‘插羅郡 太守’로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插良州 干’(『三國史記』 권제45 列傳5 朴堤上條)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南在祐는 그의 논문(“新羅 上古期の ‘國人’層” 『韓國上古史學報』 10, 1992, p.371.)에서 신라 州郡制의 시행은 보통 지증왕대로 보므로 눌지代에는 아직 태수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삼국사기』의 ‘干’을 더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남재우는 이 논문에서 눌지왕대 박제상 관련 고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미 최의광 논문(최의광, 앞의 논문, 2005, pp.285-286.)에서도 재론되

〈표-2〉 국인 추정 인물 및 관련 사료

국인	시기	관련 사료
A 박제상	눌지 마립간	① 王召集群臣及 國中豪俠<중략>若得見二弟 共謝於先王之廟 則能報恩於國人 誰能成其謀策 時百官咸奏曰 此事固非易也 必有智勇方可 臣等以爲歆羅郡太守提上可也44) ② 及訥祗王 卽位 思得辯士往迎之 聞水酒村干伐寶靺 一利村干仇里適 利伊村干波老三人有賢智 召問曰 吾弟二人 人質於倭麗二國 多年不還 兄弟之故 思念不能自止 願使生還 若之何而可 三人同對曰 臣等聞敵良州干堤上剛勇而有謀 可得以解殿下之憂45)
B 김인문	태종왕	① 太宗聞百濟國中多怪變 五年庚申遣使仁問請唐兵 高宗詔左虎衛大將軍荊國公蘇定方爲神丘道行策(軍)摠管46) ② 國人之所請唐兵 屯于平壤郊 而通書曰 急輸軍資 王會群臣問曰 <중략>唐師蘇定方紙畫鸞犢二物廻之 國人未解其意 使問於元曉法師47)
C 김양 이흥 배훤백	흥덕왕 薨 直後	① 初興德王之薨也 其堂弟均貞 堂弟之子悌隆 皆欲爲君 於是侍中金明 阿滄利弘 裴萱伯等 奉悌隆 阿滄祐徵與姪 金禮徵及金陽 奉其父均貞 一時入內相戰 金陽中箭 與祐徵等逃走 均貞 遇害 而後悌隆 乃得 卽位48)
D 왕거인	진성여왕	① 第五十一 眞聖女王 <중략> 擅權撓政 盜賊蜂起 國人患之 乃作陀羅尼隱語 書投路上 王與權臣等得之 謂曰 此非王居仁 誰作此文 乃囚居仁於獄 居仁作詩訴于天 天乃震其獄囚以免之50)

다음은 통일기 김인문에 대한 것으로, 위에 제시된 두 사료들을 서로 비교하면 김인문이, 나·당 전쟁시 당에 병사(병력) 지원을 요청한 국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인문은 익히 아는 바대로 태종왕 김춘추의 次子이면서 문무왕의 친제(親弟)이고 사료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또한 파진찬이다. 그렇다면 이는 왕족으로 진골이기도 하고 또 군신의 무리에도 들어갈 것이다.⁵¹⁾

김양·이흥·배훤백은 흥덕왕 사후 희강왕 즉위 시에 양파로 나뉘어져 왕위 다툼에 참여한 인물들로 필자는 이들을 국인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⁵²⁾ 이는 하대 초 원성왕 즉위과정에 나타난 국인들의 모습에서 유추한 것이다.⁵³⁾ 희강왕 즉위 시에 나뉘어 대립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원성왕 즉위 시 국인추대회의에 참여했던 인물들에게 보였던 그 대립구도와 모습이

어진 바 있다.

45) 『三國遺事』 권제1 제2 紀異篇 上 奈勿王 金堤上.

45) 『三國史記』 권제45 열전제5 朴堤上條.

46) 『三國遺事』 권제1 제2 紀異篇 上 太宗春秋公.

47) 『三國遺事』 권제1 제2 紀異篇 上 太宗 春秋公.

48)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 10 僖康王 卽位條.

50) 『三國遺事』 권제2 제2 紀異篇 下 眞聖女大王 居陋知.

51) 『三國史記』 권제44 열전 제4 金仁問條 및 최의광, 앞의 논문, 2005, pp.286-287. 참조.

52) 이 부분은 최의광 논문(「新羅 下代 王位 繼承 分爭과 國人」 『史叢』 75, 2012, pp.142-144.) 참조.

53) 하대 원성왕 즉위 시에 등장하는 국인들은 김주원과 김경신 측 두 파로 나누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국인이려면 흥덕왕 사후 희강왕 즉위시 두 파로 나누어 대립했던 인물들도 결국은 국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단 원성왕 즉위 시에는 이들이 합의되어 이른바 국인추대를 이루었고 회강왕 즉위 때에는 처음에 김제용(후의 회강왕)과 김균정 양 세력 간의 합의가 무산되고 무력대립으로 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 뿐 만 아니라 사료에 보이는 김균정, 김우징, 예징, 김명 등도 국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진성여왕 때 활동한 왕거인의 사례 또한 주목된다. 기사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왕거인은 국인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다. 중요 부분을 살펴보면, 국인들이 이를 걱정하여 ‘타라니(陀羅尼)’ 문장을 지어 길에 던졌는데, 왕과 권신 등이 그 저자로 왕거인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단순한 3단 논법이라 비판할 수 있겠으나 문장 구조상 ‘왕거인 = 국인’ 등식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왕과 권신 등이 ‘타라니’의 작자로 거인을 주목한 것 또한 왕거인이 국인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고 여겨진다. 또 주목할 부분은 그가 대야주에 거주한다는 사실이고, 그의 신분을 6두품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⁵⁴⁾ 그렇다면 국인에 6두품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대야주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박제상과 마찬가지로 국인의 활동무대가 왕경 보다는 그 범위가 넓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개별 인물들을 분석하는 것은 국인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들의 활동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국인 추정 인물 현황

인물	활동시기	인물의 성격	활동지역(장소)
박제상	눌지왕, 상대(상고)	地方 小國의 干層(내마 11등급)	지방 소국(삼랑주)
김인문	문무왕, 중대 초	王子, 王弟, 角干, 파진찬	주요 국도(궁중)
김양	흥덕왕~문성왕, 하대 중엽	시중(진골)	주요 국도(궁중)
이홍		아찬(6두품)	
배훤백		아찬(6두품)	
왕거인	진성여왕, 하대 말	6두품	지방(대야주)

이를 통해서 우선 국인의 범주를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위로는 왕족으로부터 아래로는 소국의 ‘간’층까지이다.⁵⁵⁾ 그런데 이는 시대와 시기를 건너 뛴 것으로 일부 허점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자체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또한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인의 의미나 개념이 시시각각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파악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포괄적 신라 국인의 개념이 시시각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국인들의 정치활동 용례⁵⁶⁾

54) 全基雄, 앞의 책, 1996, pp.27-47.

55) 그런데 꼭 소국의 ‘간’ 층을 국인 範疇의 下限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료 상 그렇게 확인된 것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왕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한 사례들 즉, 국인들의 정치관련 활동을 상호 비교하면서 국인의 개념을 또한 추출해 보고자 한다. 다음 사례는 일반민으로 보여 지는 국인이 아니라 다분히 지배층으로 보여 지는 사료들이다. 주로 국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왕을 추대하거나 장례를 주관한 경우 또 국정을 우려하고 비방하거나 하는 정도의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다.

〈표-4〉 국인들의 정치활동 사례

시기(해당왕)	내 용	비고	
상고 · 상대	赫居世	G-① 始祖性朴氏 諱赫居世<중략>六部人 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 立爲君焉 ⁵⁷⁾	
	赫居世	② 理國六十一 王升于天 七日後 遺體散落于地 后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중략>太子南解王繼位 ⁵⁸⁾	
	南解	③ 王謂左右曰 二聖棄國 孤以國人推戴 謬居於位 危懼若涉川水 ⁵⁹⁾	
	婆娑	④ 初脫解莫 臣僚欲立儒理王太子逸聖 或謂逸聖雖稱而威明不及婆娑 遂立之.<중략>國人嘉之 ⁶⁰⁾	
	伐休	⑤ 伐休尼師今立<중략> 阿達羅薨 無子 國人立之 ⁶¹⁾	
	助賁	⑥ 助賁繼位 王身長美儀采 臨事明斷 國人畏敬之 ⁶²⁾	
	沾解	⑦ 沾解無子 國人立味鄒 ⁶³⁾	
	訖解	⑧ 訖解尼師今立 奈解王孫也<중략> 基臨薨無子 群臣議曰 訖解幼有老成之德 乃奉立之 ⁶⁴⁾	
	實聖	⑨ 奈勿薨 其子幼少 國人立實聖 ⁶⁵⁾	
	訥祗	⑩ 若得見二弟 共謝於先王之廟 則能報恩於國人 誰能成其謀策 時百官咸奏曰 此事固非易也 必有智勇方可 臣等以爲敵羅郡太守提上可也 ⁶⁶⁾	
	眞興	⑪ 王薨諡曰眞興 葬于哀公寺北峯<중략>王妃亦效之爲尼 住永興寺 及其薨也國人以禮葬之 ⁶⁷⁾	
	眞智	⑫ 第二十五 舍輪王<중략> 御國四年 政亂荒姪 國人廢之 ⁶⁸⁾	
	善德	⑬ 善德王立 <중략> 王薨無子 國人 立德曼 ⁶⁹⁾	
	善德	⑭ 二於靈妙寺玉門池 冬月衆蛙集鳴三四日 國人怪之 問於王 ⁷⁰⁾	
	眞德	⑮ 王之代有關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 慈藏之父 廉長公 庾信公 會于南山 汚紙巖 議國事 ⁷¹⁾	
중대	太宗	H-① 太宗武烈王立<중략>及眞德薨 群臣請關川伊浪攝政 關川固讓曰<중략>遂奉爲王 ⁷²⁾	
	聖德	② 聖德王立<중략> 孝昭王薨無子 國人立之 ⁷³⁾	
하대	宣德	③ 乃下詔曰 寡人本惟菲薄 無心大寶 難逃推戴 作其即位 ⁷⁴⁾	
	元聖	④ 元聖王立<중략> 及宣德薨 無子 羣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중략>周元不得渡 或曰<중략> 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 衆議翕然 立之繼位 既而雨止 國人皆呼萬歲 ⁷⁵⁾	
	閔哀	⑤ 閔哀王二年 <중략> 兵士尋而害之 群臣而禮葬之 諡曰閔哀 ⁷⁶⁾	
	眞聖女王	⑥ 第五十一 眞聖女王 臨朝有年 乳母臯好夫人 與其夫魏弘匠干等三四寵臣 擅權撓政 盜賊蜂起 國人患之 乃作陀羅尼隱語 書投路上 王與權臣等得之 謂曰 此非王居仁誰作此文 乃囚居仁於獄 居仁作詩訴于天天乃震其獄囚以免之 ⁷⁷⁾	
	神德	⑦ 神德王立<중략>孝恭王薨 無子 爲國人推戴即位 ⁷⁸⁾	

56) 이 부분은 최의광 논문(앞의 논문, 2005, 275~288쪽)을 참조했으며 많은 부분 재론되었음을 밝힌다.

57) 『三國史記』 권제 1 新羅本紀 제1 始祖赫居世居西干.

58) 『三國遺事』 권제1 제2 紀異篇 上 新羅始祖 赫居世王.

59) 『三國史記』 권제1 新羅本紀 제1 南解 次次雄即位條

60) 『三國史記』 권제1 新羅本紀 제1 婆娑王尼師今 即位條

61) 『三國史記』 권제 2 新羅本紀 제2 伐休尼師今 即位條.

62) 『三國史記』 권제2 新羅本紀 제2 助賁尼師今 即位條

63) 『三國史記』 권제 2 新羅本紀 제2 味鄒尼師今 即位條.

64) 『三國史記』 권제 2 新羅本紀 제 2 訖解尼師今 即位條.

일단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국인 기사를 정치활동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위에 <표-4>이다.⁷⁹⁾ 이는 지배층으로서의 활동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王位 順으로 나열하였다. 우선 국인들이 국왕을 추대·폐위하는 모습이 10여 차례 보인다. 그리고 장례를 주관하는 모습이 3차례(G-② ⑪, H-⑤), 국왕을 평가하는 사례가 2차례(G-④,⑥) 이밖에 다양한 모습들이 또 몇 차례 보인다. 어쨌든 이는 정치활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세력인지 그 용어를 명기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H-③) 제시하였다. 어차피 국인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놓은 곳은 어느 곳에도 없으므로 여기서는 전체 용례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개념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은 포괄적인 국인 개념에 포함되는 실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표현 중에 꼭 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군신(신료)(G-④, H-①) 혹은 6부인(G-①)들로도 표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혁거세를 추대한 6부인을 이종항은 6부족장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국왕을 추대하는 국인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혁거세가 죽을 때 장례를 주관한 국인(G-②)과는 어떤 관계일지가 궁금한데, 바로 남해를 추대하는 국인들(G-③)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선왕인 1대 혁거세의 장례를 주관한 자들과 2대 남해를 추대한 자들은 같은 세력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혁거세를 추대한 6부인들 또한 국인 범주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 과사를 추대한 군신(G-④)과 벌휴를 추대한 국인(G-⑤)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력일까? 일단 이는 의문으로 접어두고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즉, 과사, 흘해, 태종을 추대한 자들은 군신(신료)으로 그리고 남해, 벌휴, 실성, 善德, 신덕의 추대 시에는 국인으로, 원성의 추대 시에는 국인과 군신이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 하대 초 宣德은 추대한 사실만 나오고 그 주체가 群臣인지 國人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국인과 군신을 전혀 다른 별도의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고

65) 『三國史記』 권제 3 新羅本紀 제3 實聖尼師今 卽位條.
 69) 『三國遺事』 권제1 제2 紀異篇 上 奈勿王 金堤上
 67) 『三國史記』 권제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37年
 68) 『三國遺事』 권제1 제2 紀異篇 上 桃花女 鼻荊郎
 69) 『三國史記』 권 제5 신라본기 5 善德王 卽位條.
 70) 『三國遺事』 권제1 제2 紀異篇 上 善德王 知幾三事
 71) 『三國遺事』 권제 1 제2 기이편 眞德王.
 72) 『三國史記』 권제 5 新羅本紀 제5 太宗王 卽位條.
 73) 『三國史記』 권제 8 新羅本紀 제8 聖德王 卽位條.
 74) 『三國史記』 권제 9 新羅本紀 제9 宣德王 6年條
 75) 『三國史記』 권제10 新羅本紀 제10 元聖王 卽位條
 76) 『三國史記』 권제10 新羅本紀 제10 閔哀王 二年條.
 77) 『三國遺事』 권제2 제2 紀異篇 下 眞聖女大王 居陁知.
 78) 『三國史記』 권제 12 新羅本紀 12 神德王卽位條.
 79) 최의광, 앞의 논문, 2005, pp.275-282 참조.

본다. 즉, 한 때는 ‘국인이라고 하는 별정집단’이, 또 한 때는 ‘군신이라고 하는 별정집단’이 국왕을 추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라 상고부터 하대 말까지 그 추대 유형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각 시기마다 그 추대자가 군신 혹은 국인으로 그 명칭이 다르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집단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I-① [婆娑王尼師今 卽位條] 初脫解薨 臣僚欲立儒理王太子逸聖 或謂逸聖雖嫡嗣而威明不及 婆娑立之婆娑節儉省用而愛民 國人嘉之<『三國史記』 권제1 新羅本紀 제1 婆娑王尼師今 卽位條>
- ② (元聖王 卽位) 元聖王立<중략> 及宣德薨 無子 羣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중략>周元不得渡 或曰 <중략>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 衆議翕然 立之繼位 旣而兩止 國人皆呼 萬歲<『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元聖王 卽位條 >
- ③ [紀異篇下 元聖大王] 未幾 宣德王崩 國人欲奉周元爲王 將迎入宮 家在川北 忽川 漲不得渡 王先 入宮卽位 上宰之徒衆 皆來附之 拜賀新登之主 是爲元聖大王 諱敬信 金武(氏)<『三國遺事』 권제2 제2 紀異篇 下 元聖大王>

위 사료는 <표-4>에 제시된 사료들 중 일부를 다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상고기 파사와 하대 원성왕의 즉위과정에 등장하는 군신과 국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파사 즉위 시 군신들이 아우인 파사를 선택했는데, 이 파사에 대해서 칭찬하는 세력이 국인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국인들이 ‘嘉’한다 하였으므로 일단 군신과 구별이 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원성왕대의 사례를 보면 『삼국사기』에는 군신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국인이 나온다(I-②). 당시 원성왕이 추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모두 원성왕의 추대 즉위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군신과 국인이 완전히 다른 세력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삼국사기』가 보다 자세하며 구체적인 표현이고 『삼국유사』가 좀 더 원만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앞의 『삼국사기』에서 군신이라고 한 부분을 그냥 국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필법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⁸⁰⁾ 그 보다는 군신과 국인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군신을 국인으로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⁸¹⁾

그리고 그 개념은 상고나 하대나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 초부터 하대말까지 그 추대 스타일이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눌지왕 때에 있었던 박제상 古事를 통해서도 우리는 포괄적 국인의 범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선 주목해 볼 부분은 당시 국인이 박제상을 포함한 소국의 ‘干’들만을

80) 박남수, “新羅 和白會議 關係記事의 檢討”,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2, pp.33-34.

81) 國人과 群臣의 關係 부분은 최의광 논문(앞의 논문, 2005, pp.296-308.) 참조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다. 만약 눌지왕 代에 국인이라고 칭함 받은 세력이 오로지 ‘간’들 만이라면 바로 앞의 실성왕을 추대한 국인(표4, G-⑨)과 뒤 시기 진흥왕을 장례한 국인(표4, G-⑪) 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선 눌지 보다 바로 전시기인 실성을 추대한 세력은 국인이라 명명되어 있는데 이들이 과연 ‘干’ 들일지 생각해 볼 일이다. 뒤의 진흥왕 흥거서에 장례를 주관한 국인도 마찬가지이다. 이들도 ‘干’ 들일지 생각해 볼 만한데 그렇게 생각 되지는 않는다.

〈표-5〉 신라 국인에 대한 제 견해

시기(왕)	역 할	추정 개념 · 성격	비고
朴赫居世	박혁거세 추대세력(6부인)	· 6부족장 ⁸²⁾	
伐休尼師今	벌휴이사금 추대세력(국인)	· 양부세력 ⁸³⁾	
訥祗麻立干	눌지를 도와 왕자를 구출하는데 앞장선 세력(박제상 같은 인물이 이에 해당)(국인)	· 地方 小國의 ‘干’ 層 ⁸⁴⁾	
眞智王 眞平王	진지왕을 폐위하고 진평왕을 즉위시킨 세력(국인)	· 화백회의의 구성원 ⁸⁵⁾ · 진평왕 직계인 동륜제 ⁸⁶⁾ · 국왕중심의 정치체제의 추구에 반발한 부세력 집단 ⁸⁷⁾ · 전반적으로 진평왕 초기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 ⁸⁸⁾	
善德女王	선덕왕을 즉위시킨 세력(국인)	· 당대의 정치세력 ⁸⁹⁾ · 선덕여왕을 지지한 정치세력, 그러나 선덕여왕의 지지세력만으로 볼 수는 없음,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보기 어려움 ⁹⁰⁾	
上古, 上代		· 화백회의의 구성원 ⁹¹⁾ · 부계와 모계를 망라한 왕실 구성원 ⁹²⁾ · 내물왕계 씨족 구성원 ⁹³⁾	
聖德王 宣德王	성덕왕 추대세력(국인) 선덕왕 추대세력(?)	· 진골귀족 ⁹⁴⁾ · 선덕왕 지지세력 ⁹⁵⁾	
元聖王	원성왕 추대세력(국인, 군신)	· 自派지지 세력 ⁹⁶⁾ · 귀족세력 ⁹⁷⁾ · 화백회의에 참가한 귀족세력들 ⁹⁸⁾ · 백성 ⁹⁹⁾ · 군신을 포함한 보다 넓은 세력 ¹⁰⁰⁾	
神德王	신덕왕 추대세력(국인)	· 진골귀족(경문왕계 왕통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던 세력) ¹⁰¹⁾ · 자파(박경휘-신덕왕 측) 지지세력 ¹⁰²⁾	
眞聖女王 下代	다라니 은어를 지은 세력(국인) 국왕 추대(국인)	· 일반 왕경인(여론주도층) ¹⁰³⁾ · 왕경에 거주하는 일정한 범주의 정치집단 ¹⁰⁴⁾	

82) 李鍾恒, “和白-그 起源과 構成과 權限을 중심으로-” 『國民大論文集』, 1971, pp.78-86.

83) 李明植, 『新羅政治史研究』, 螢雪出版社, 1992, p.59.

84) 南在祐, “新羅上古期の 國人層” 『韓國上古史學報』, 1992, pp.369-373.

85) 申澄植, 『新羅史』, 이화여대출판부, 1985, pp.188-189.

86)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 信仰” 『韓國學論叢』 10, 1988, p.29.

87) 姜鳳龍, “6~7세기 新羅政治體制的 再編 과정과 그 限界” 『新羅文化』 9, 1992, pp.138-139.

88) 李晶淑, “中古기 新羅의 中央政治體制와 權力構造” 『新羅文化』 25, 2005, pp.49-52.

89) 李周熙, “新羅 善德王의 王位繼承”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9.

다소 시기가 멀지만 흘해의 즉위 때에 그 즉위를 주관한 것이 군신이고 또 민애왕 때에도 그 장례를 주관한 것이 군신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干’ 들만을 국인이라 칭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干’ 들도 당시의 국인에 포함된 일 부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눌지왕대의 국인은 소국의 ‘干’ 들만을 가리켰다거나 아니면 신라상고기 전체에서 국인이 시종일관 바로 ‘干’ 들만을 지칭한 것이라면¹⁰⁵⁾ 전후의 용례들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위의 <표-5>는 그간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국인의 성격에 대하여 제가들의 견해를 모아본 것이다.

더러는 포괄적 국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사례도 일부 있지만, 해당 시기에 국한된 국인 실체에 대한 견해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견해의 양상은 각 양 각색으로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제가들의 견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특히 국왕과 관련하여 활동한 사례들임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국인의 최초의 활동 모습은 혁거세 장례시에 나타나고 있다(<표-4>의 G-②). 『삼국사기』에 보이는 최초의 국인 활동은 G-③의 남해왕 즉위과정에 나타난 모습이다. 박혁거세를 추대한 세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6부인으로 나오며 국인이라 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후의 여러 국인 사례를 볼 때 이들도 결국 국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서 확인되는 사실중 하나는 신라 전시기에 걸쳐 등장하는 국인들은 모두 최상위 계층 혹은 최상위 부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6부족장이니 왕실구성원이니 화백회의 구성원 진평왕 즉위 후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이니 이러한 부분들이 이를 말해준다. 공간적 개념으로 나누자면 소국의 ‘간’ 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그 활동무대를 왕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인을 ‘梁部세력’ 혹은 ‘내물왕계 씨족 구성원’ 등으로 본 견해는 좀 독특하다. 이 견해들은 당시 국왕을

90) 조범환,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문고, 2000, pp.19-20.

91)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00쪽; 李丙燾, “古代南堂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申澄植, 『新羅史』, 梨花女大出版部, 1985.

92)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0, p.230.

93) 李基東, “新羅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歷史學報』 53, 1972,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p.84.

94)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pp.56-57.

95) 金昌謙, 『新羅下代王位繼承研究』, 景仁文化社, 2003, p.190.

96) 金昌謙, 위의 책, 2003, p.193.

97) 권영오, 앞의 글, 2007, p.44.

98) 申政勳, 앞의 글, 2001, p.33.

99) 申澄植,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pp.70-73.

100) 최의광, 앞의 글, 2005, pp.306-308.

101) 宋銀日, “新羅下代 景女王系집권기의 정치운영”, 全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p.190.

102) 金昌謙, 위의 책, 2003, pp.195-198.

103) 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도서출판 혜안, 1996, pp.42-45. 씨는 왕거인을 국인이면서 6 두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4) 金昌謙, 위의 책, 2003, p.211.

105) 남재우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른 바 그의 논문 주제가 ‘新羅 上古期의 國人 層’ 이므로 ‘상고기’ 전반에 걸쳐 국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南在祐, 앞의 논문, 1992).

추대한 세력을 6부중 梁部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일 것으로 추정하거나 혹은 내물왕이 속해 있는 씨족집단일 것으로 추측한 것인데, 특정 집단에서 국왕을 추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추대된 벌휴가 양부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부지역의 인물들이 추대세력으로 등장한 국인세력에 많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단위 部집단에서 그들 만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인물이 추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내물의 즉위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씨족 구성원들의 지지가 있었을 것임은 의심할 바 없겠지만 이들이 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추대에 관여할 때는 자신의 소속을 초월한 집단의 추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사려 된다. 공간적 개념을 기준으로 논하자면 국왕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인들 대부분이 중앙에서 활동하는 세력 그리고 관직으로 말하자면 고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즉, 박혁거세를 추대한 6부인도 각 부의 대표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이는 부족을 대표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심히 중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4>에서 보듯이 파사를 추대한 신료들이나 흘해를 추대한 군신들을 주목할 때 이들을 특정 부에 소속된 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근거 없이 양부 세력이나 내물계 씨족 등일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듯 하다.¹⁰⁶⁾ 그리고 『삼국사기』 등 사료에도 각 部에 소속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 ‘貴山 沙梁部人也’¹⁰⁷⁾ ‘崔致遠 王京 沙梁部人也’¹⁰⁸⁾ 등으로 그 부명을 직접 나타낸 예들이 허다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초점을 중앙 상위계층에 놓고 논지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범주에 속하는 견해들도 그 상호간의 포함관계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특히 화백회의의 구성원으로 본 견해는 사실 화백회의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견해인 것 같으나 사실상 애매한 경우이다. 대체적으로 화백회의의 구성원들을 중앙귀족 정도로 보고 있는 듯하다. 또 군신이 이의 중심일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견해들도 있다.¹⁰⁹⁾ 국인은 곧 군신이라는 것이다. 사실 사료 상으로 본다면 국왕 추대 등 중대한 일에 참여하는 국인의 중심은 바로 군신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왕을 추대하는 세력을 군신으로 아예 명명한 사례가 꽤 있을 뿐더러¹¹⁰⁾ 비록 국인이라고 칭한 사례들도 이들이 군신과 별도의 집단으로 표현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인과 같거나 더 적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국의 ‘간’층”은 설령 국왕의 일을 돕는 국인의 실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106) 그리고 이 부분은 국인들에 의한 국왕 추대의 기본성격과 견주어 볼 때에도 맞지 않는다. 국왕추대는 자기 지지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참여자들의 합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107) 『三國史記』 권제 46 列傳 제6 崔致遠條.

108) 『三國史記』 권제 45 列傳 제5 貴山條.

109) 특히 이에는 이인철이 대표적이다. 그는 화백회의 대신에 군신회의로 부를 것을 주장했다.(『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p.87.)

110) 파사, 흘해, 태종 등이 군신들의 추대로 즉위한다.<표-4> 각 왕별 즉위 사례 참조)

들이 국왕을 추대하는 일에 참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혁거세를 추대한 것은 6부인 즉 6부족장이고, 파사는 신료에 의해서, 흘해는 군신에 의해서 그리고 눌지 바로 전의 실성은 국인에 의해서 즉위하였는데 이들은 소국의 '간'과는 관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장한 남재우는 이러한 “지방 소국의 ‘간’들이 국가의 중대사에 관여 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들이 국왕을 추대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눌지 당시의 국인에는 소국의 ‘간’들만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국왕을 추대하는 일은 궁중에서 최상위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제가들의 견해가 이렇게 구구하고 혼란스럽기 까지 한 것은 국인에 대한 기본개념과 그 실체를 구별하지 않고 각자 해당시기의 단편적인 사례만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포괄적 국인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국인은 국도(國都)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국사(國事)에 참여하며, 민(民)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상위 부류로서 위로는 왕족을 포함하며 아래로는 지방 소국의 간(干)층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범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정치인’을 즉 “국회의원, 정당인, 고위관료 지역 단체장들처럼 국가 혹은 자기 지역의 맡은바 정치적 정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의 정의다. 국인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에 주창되었던 포괄적 국인에 대한 ‘일반민’이라든지 아니면 ‘왕경인’ 등으로 정의한 것은 사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포괄적 국인에 포함되는 실체들은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한 부류들이다. 혁거세를 추대한 6부족장이나, 군신들, 진골, 양부세력, 6두품, 소국의 간층 등 다양하다. 이들을 통해 볼 때 국인이 특정집단 만을 가리키는 것은 역시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특정시기에 국인에 해당하는 집단이 따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 시에는 바로 6부족장만이 국인에 해당되었는데, 파사 때에는 ‘군신’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눌지마립간 때도 바로 ‘소국의 干’만이 국인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국인은 일정선 이상의 지배층들 모두를 가리키는 칭호라고 생각한다. 이 ‘국인’은 후대로 오면 국초 보다 수량 면에서는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姜鳳龍, “6-7세기 新羅政治體制的 再編 과정과 그 限界”, 『新羅文化』 9, 1992.
-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の 釋迦佛 信仰”, 『韓國學論叢』 10, 1988.
- 金普漢, “日本 南北朝 內亂期の 國人の 政治的 動向”, 『史學志』 23輯, 檀國大學校史學會, 1990.
-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 吉本道雅, “春秋國人考”, 『史林』, 1986.
- 김창겸, 『新羅下代 王位繼承研究』, 景仁文化社, 2003.
- 南在祐, “新羅 上古期の ‘國人’ 層”, 『韓國上古史學報』 10, 1992.
- 朴南守, “新羅 和白會議 關係記事의 檢討”,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2.
- 朴淳教, “金春秋의 執權過程研究”, 慶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9.
- 박순교, “眞智王의 改革과 花郎徒의 動向”, 『清溪史學』 18, 2003.
- 박용국, “新羅 眞智王의 廢位와 眞平王 初期의 政治的 性格”, 『大丘史學』 85, 2006.
- 徐復觀, 『兩漢思想史』, 1985.
- 申鉉雄, “朴堤上의 出自와 身分問題”, 『新羅文化』 27, 2006.
- 申滢植, 『新羅史』, 이화여대출판부, 1985.
- _____, 『新羅史』, 梨花女大出版部, 1985.
- 余昊奎, “高句麗初期의 諸加會議와 國相”, 『韓國古代史研究』 18, 1998.
- 尹乃鉉, 『商周史』, 民音社, 1984.
- 李基東, “新羅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 1972.
- _____,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 _____,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 李明植, 『新羅政治史研究』, 螢雪出版社, 1992.
- 李丙燾, “古代南堂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 李晶淑, “中古기 新羅의 中央政治體制와 權力構造”, 『新羅文化』 25, 2005.
-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0.
- 李鐘恒, “和白-그 起源과 構成과 權限을 중심으로-”, 國民大論文集, 1971.
- 李周燾, “新羅 善德王의 王位繼承”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李春植, 『事大主義』,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李喜寬, “新羅 上代 智證王系의 王位繼承과 朴氏 王妃族”, 『東亞研究』 20, 1990.
- 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도서출판 혜안, 1996.
- _____,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도서출판 혜안, 1996.
- 鄭載潤, “東城王 23年 政變과 武寧王의 執權” 『韓國史研究』 99, 1997.
- 晁福林, “春秋時期禮의 發展与 社會觀念의 變遷”,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1994.
- 최의광, “高句麗의 國人 研究”, 『史叢』 58, 2004.
- _____,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보이는 新羅의 ‘國人’ 記事 檢討”, 『新羅文化』 25, 2005.

_____, “新羅 元聖王의 王位繼承과 國人”, 『韓國史學報』, 제37호, 高麗史學會, 2009.

_____, “新羅下代 王位繼承 分爭과 國人”, 『史叢』 75, 高麗大學校歷史研究所, 2012.

貝塚茂樹, 『孔子』, 1970.

洪淳祉, “金堤上說話에 대한 一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 2, 曉星女大, 1986.

《Abstract》

The Meaning of Silla Kingdom a People

Choi, Eui-Kwang*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gukin(國人)' that appeared on the political society in the ancient Silla of Korea, but we did not clearly reveal the concept of 'gukin'. One of the reasons is, I think, That the research on this term in the meantime has been made without distinction of its concept and reality.

In this papers I placed importance on confirming the basic concepts of 'gukin', not the substances of 'gukin'. First of all, I presumed the meaning of 'guk' and ascertained that 'gukin' was closely related to the meaning of 'guk' by reviewing each origin of words. That is to say that "guk" means guksseong or gukdo and 'gukin' means the main forces that have been at work in this area.

But we cannot fully understand its true picture of 'gukin', only with the help of a spatial concept of guk. It is because we can also see gukin's acting figures outside the space of gukdo. So I emphasized 'gukin' as a gukdo- based forces and gave more power over a concept, in which the people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ire national history on the base of ojjam meeting, and I compensated its contents. I also confirmed that the conventional opinions, in which 'gukin' sometimes also could be called 'general people' , was not reasonable on reviewing overall cases.

It is as follows to redefine of concept on 'gukin' , with the items to be confirmed in historical materials. That is to say that 'gukin' means the top category class who took part in the affairs of state and recognized the people as a lower class relatively and 'gukin' also can be called the rulling hierarchy that embraced from the royalty to the ganchung of the local small countries.

It is thought to be more appropriate expressions to take somewhat flexible expression for gukdo-based 'gukin' because if we overemphasize the meaning of only being within gukdo, its concept will not suitable for the historical materials.

Key Words : State-Men, Notion, Reality, State, Capital, General People

투고일 : 2016. 1. 29 / 심사일 : 2016. 2. 3 / 심사완료일 : 2016. 3. 10

* Kongjoo University